

- 2026년 3분기 -

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수강생 모집 공고

- 모든 프로그램은 **가좌3동 주민을 우선**으로 모집합니다.
(미달 시 타동 주민 접수 가능)
- 선착순 접수: 온라인으로 모집인원 총원 시, 방문 접수 불가
 - <1차 온라인 접수>: 2026. 6. 15.(월)~ 6. 16.(화)
 - <2차 방문 접수>: 2026. 6. 17.(수)~ 6. 30.(화)

- 모집기간 : 2026. 6. 15.(월)~ 6. 30.(화)
 - ※ 선착순 현금접수 / 모집인원 미달 시 총원 시까지 / **가좌3동 주민 우선 접수**
- 수강기간 : 2026. 7. 1.(수)~ 9. 30.(수)까지 3개월간
- 수 강 료 : **60,000원(3개월)**
- 접수방법 : - 온라인접수(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)
 - 방문 접수(가좌3동 주민자치센터)
- 모집강좌(성인)

프로그램명	수강일시		장소	비고
	요 일	시 간		
컴퓨터	화/목	10:30~11:30	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	
요가(주간)	화/목	10:30~11:3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요가(야간)A	화/목	19:00~20:0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요가(야간)B		20:10~21:1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노래교실	금	10:30~12:3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스포츠(사교)댄스	월/수	19:00~20:0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라인댄스	월/수	13:00~14:00	가좌청소년센터 공연연습실(3층)	
난타	수	10:00~12:00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	
탁구	수	13:00~15:00	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	

* 교재비 및 준비물 발생시 자부담

수강료 감면(조례 별표2)

- 등본기준 서구 주민에 한정
- 수급자(생계, 의료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 수강료 100% 감면
- 수급자(주거, 교육, 차상위계층, 한부모, 다문화 가정 등) 수강료 50% 감면
- 1강좌만 해당되며 2강좌 이상 수강 시 수강료 납부

환불규정(시행규칙 별표1)

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 (제20조 2호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문의전화 : 가좌3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☎ 032-577-7746

가좌3동 행정복지센터